www.kwla.or.kr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2024. 4. 8.(월) 13:30 ~17:00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PROGRAM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 **일　　시** : 2024. 4. 8.(월) 13:30 ~17:00

■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　　최**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15 ~ 13:30 (15분)	● **등록**	
13:30 ~ 14:50 (80분)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휴 식 (10분)		
15:00 ~ 16:20 (80분)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문혜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휴 식 (10분)		
16:30 ~ 17:00 (30분)	●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CONTENTS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환 영 사 6

왕미양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제 1 강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11

민고은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제 2 강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33

문혜정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제 3 강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55

김영미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별첨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및 양식 63

참고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환영사

왕미양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입니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 변호사로 지원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교육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공익사건 법률지원 및 상담, 입법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법 제정 이후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현재는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수단과 가해자 처벌 수위가 모두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및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범행 동기 등으로 인하여 범죄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되어 왔기에 여전히 적극적인 법적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헌신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도움을 넘어 피해자 보호체계 정립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막중한 책임을 기억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민고은 인권이사가, '교제 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주제로 문혜정 공보이사가, '무료 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김영미 사무총장이 강의해 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자리해주신 만큼 오늘 강의가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상담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8.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 미 양**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제 1 강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률사무소 진서)

스토킹처벌법 신설과 개정

1999년 제15대 국회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 발의

- 주관적인 범죄 구성요건
- 스토킹 용어 사용의 문제

2021년 3월 24일
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7월 11일(일부 24년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2013년 시행 경범죄처벌법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3년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 시행

-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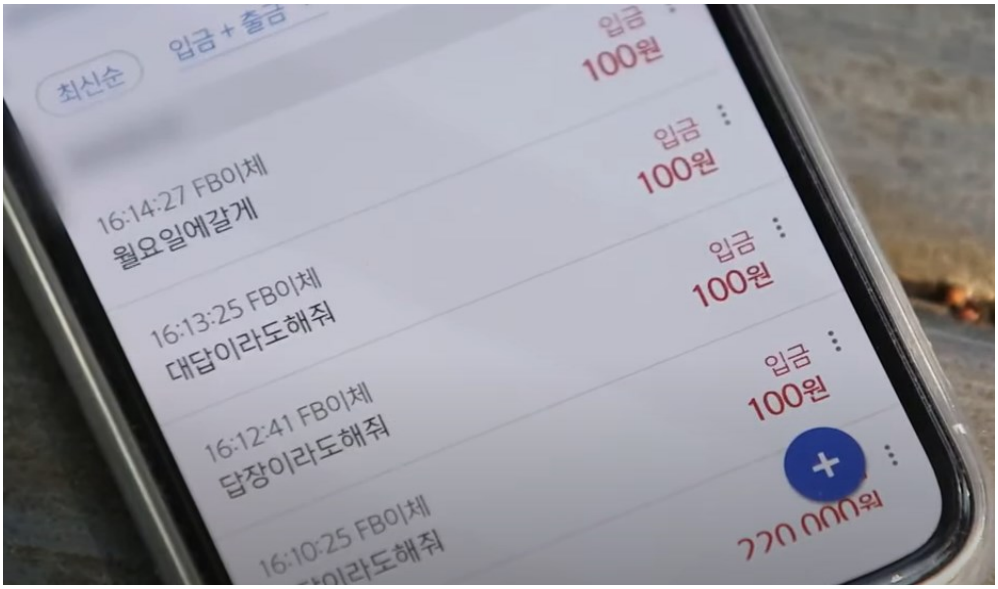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nR3wuFFiEw

스토킹범죄와 경합범죄의 범죄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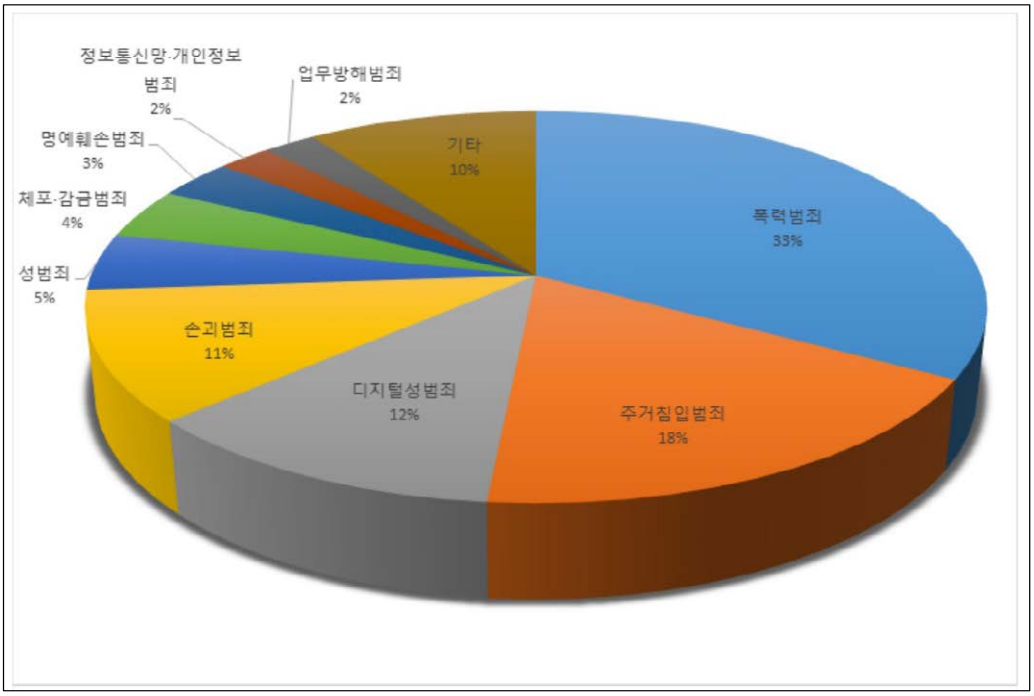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스토킹처벌법의 구성 및 해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본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4조 긴급응급조치
    -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 제12조 항고
    - 제13조 항고장의 제출
    - 제14조 항고의 재판
    - 제15조 재항고
    -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 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17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17조의3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제17조의4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3장 벌칙
    - 제18조 스토킹범죄
    -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0조 벌칙
    - 제21조
- 부칙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결기사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이미지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92317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 침해범인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 2023도74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 2023. 9.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도6411 판결)

-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함
- 피고인은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

3.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개별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스토킹행위의 속성 및 스토킹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고찰**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면 일련의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임
- 위험범에 관한 선례의 취지를 따르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임

출처 :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 2023도74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 2023. 9.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사회 사회일반

받을 때까지 '부재중 전화' 남기기... 대법, 스토킹 행위 첫 판결

피고인은 2021. 10. 29.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653.html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두 차례 접근해 '커피 마시자'…법원 "지속·반복 없으면 스토킹 처벌 불가"

입력 2023.10.30 (10:36) | 수정 2023.10.30 (10:37)

요약

이미지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072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뉴스광장 1부

이미지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4261

신당역 사건 뒤 9개월…'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처리

입력 2023.06.21 (06:35) | 수정 2023.06.21 (08:07)

이미지 출처 :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20922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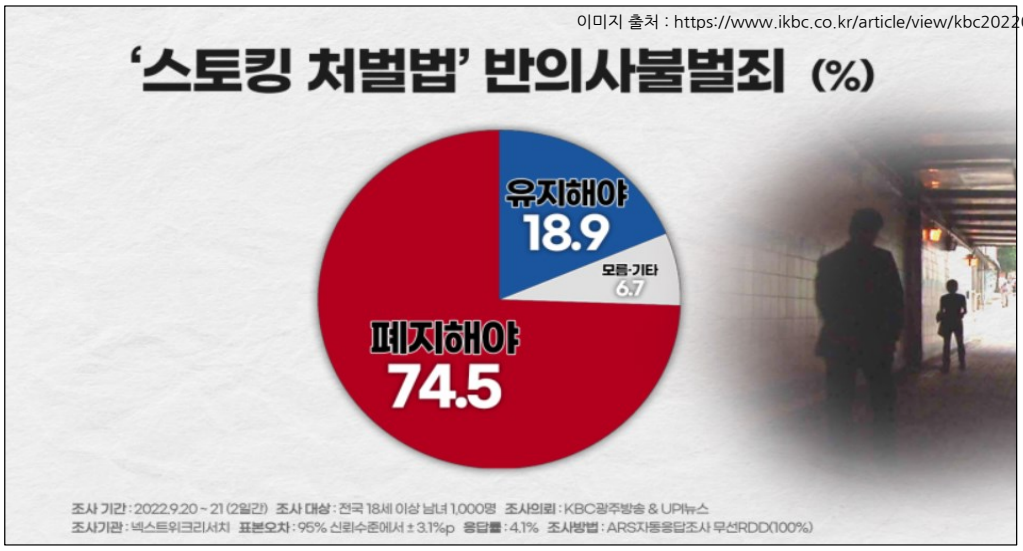

스토킹범죄의 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 → 검찰 → 법원

피해자 보호조치의 연속성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 · 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자신고등보호법시행령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신변안전조치가 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
2. 신변안전조치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시나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 지시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최초 요청한 경찰서장의 소속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3. 신변안전조치가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당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단일범죄의 양형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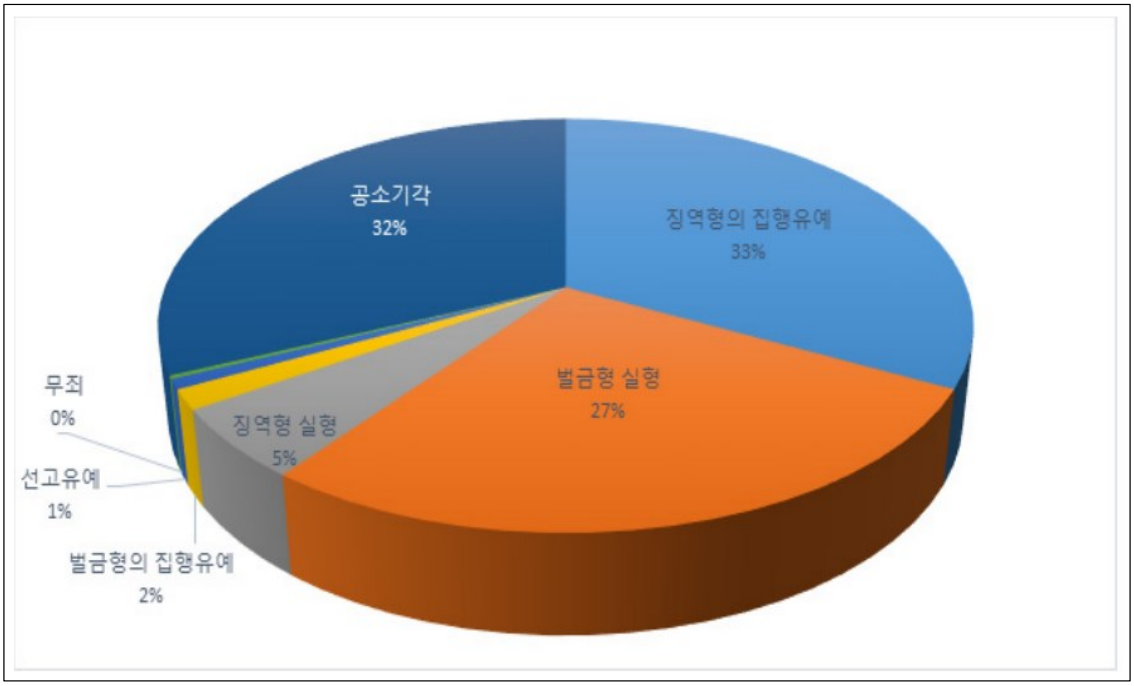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스토킹처벌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양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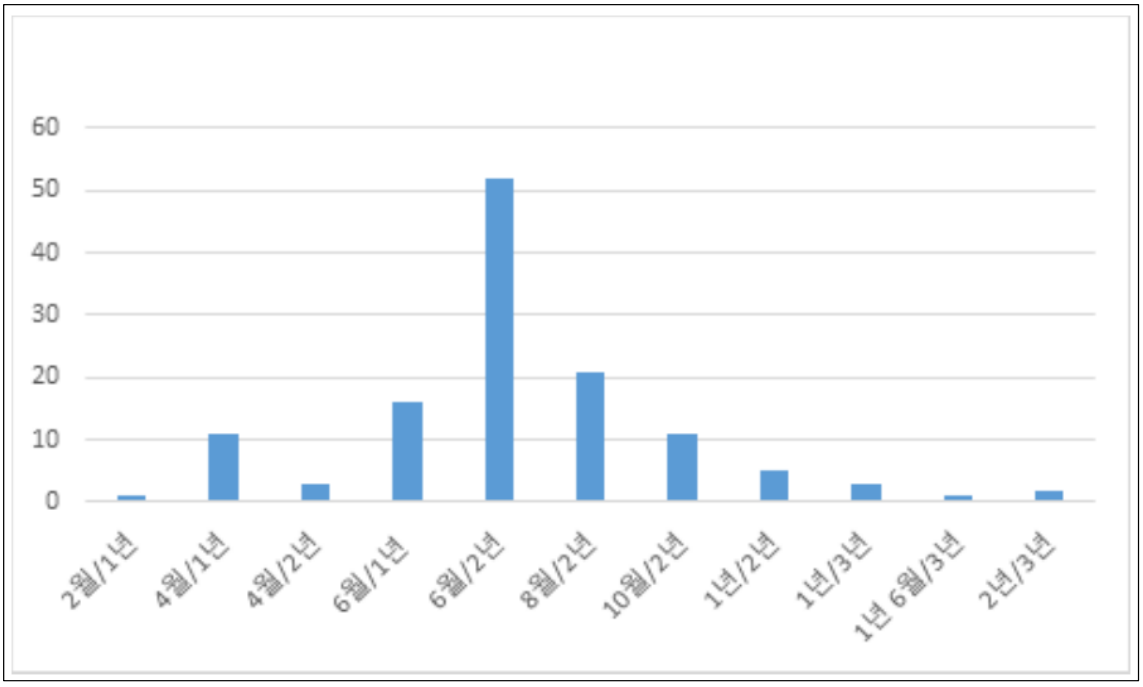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양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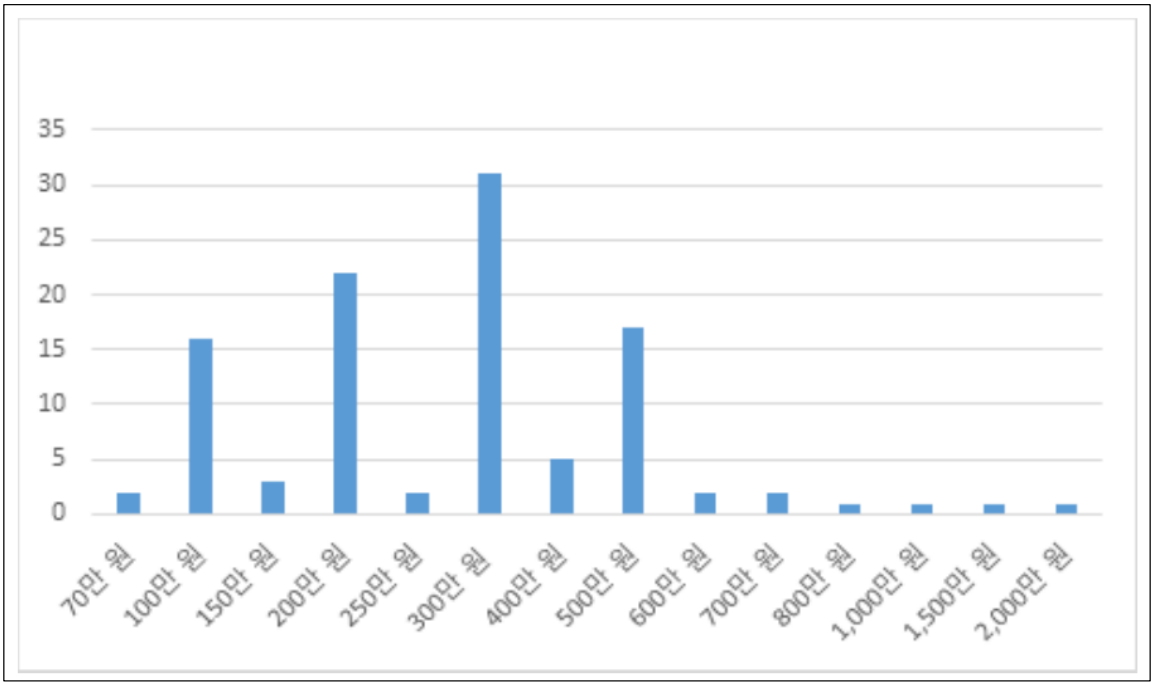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스토킹처벌법위반 징역형 실형 양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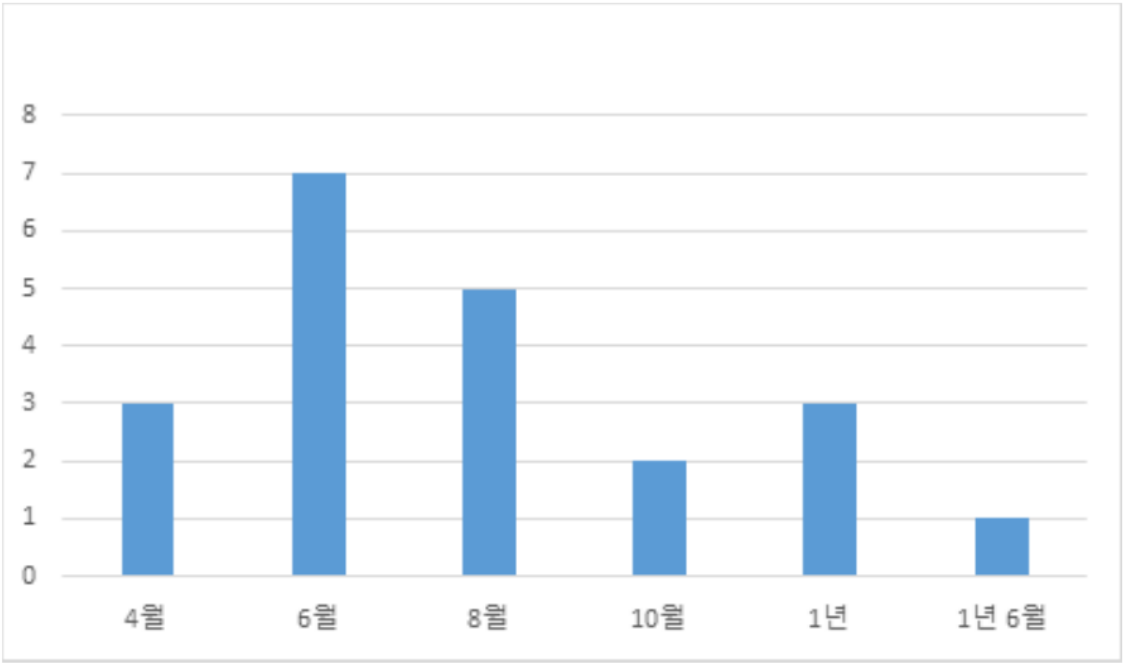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항소심 결과 분포 및 항소심 양형 감경 내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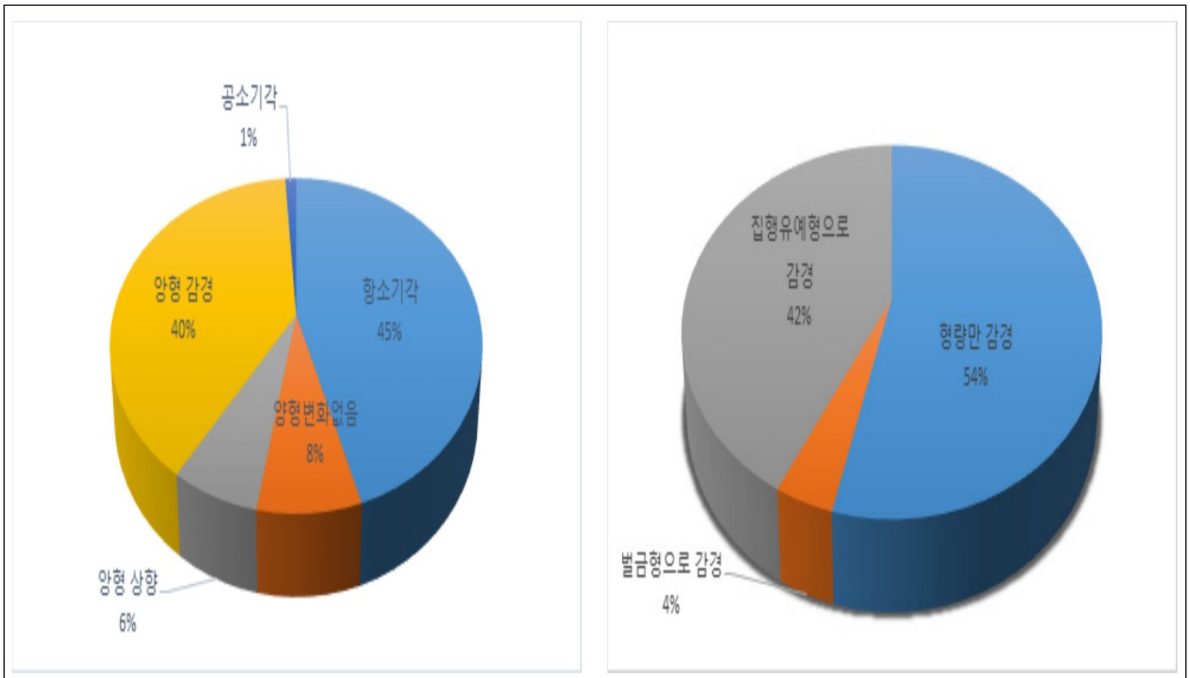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양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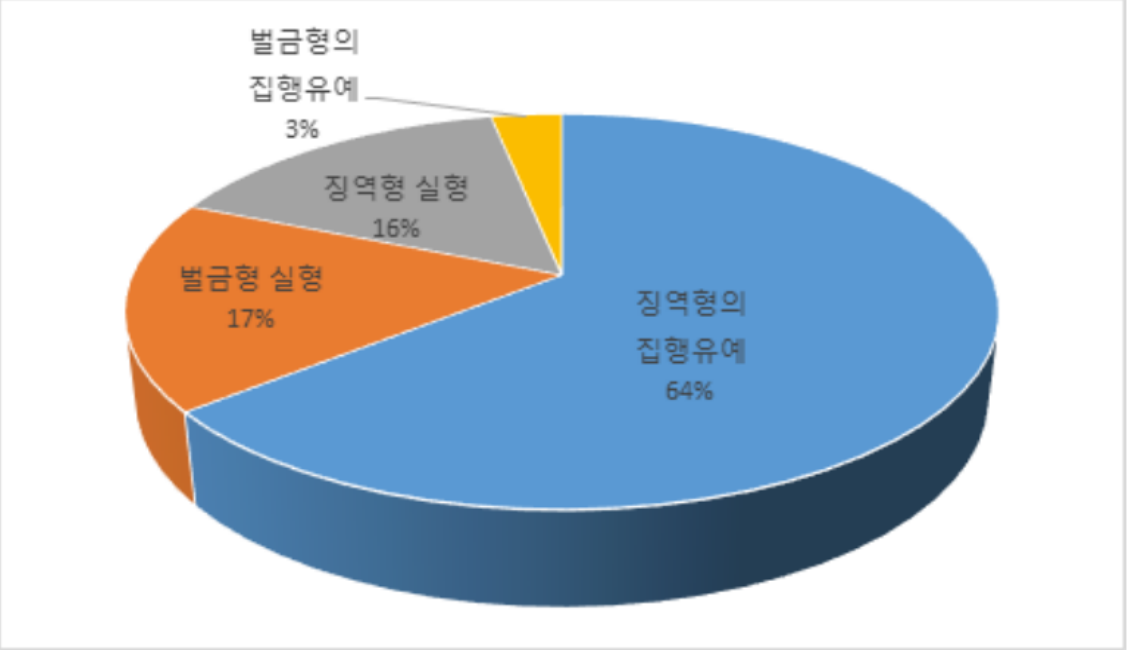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23. 10.부터 시행) △ 형 집행 종료 후 △ 가석방 중 △ 집행유예 중
⇨ (**개정**, '24. 1.부터 시행) △ 수사~재판 단계 추가

출처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 1. 12. 보도자료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출처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 1. 12. 보도자료

〈별지 제14호 서식〉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의자 (피고인)	성 명 :	
	죄 명 :	
	사건번호 :	
	관할경찰서 또는 사건번호:	

	순번	종 류	신청
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사건처분결과	□
	②	공 판 개 시	□
	③	재 판 결 과	□
	④	구 금 상 황 (수사 및 재판 중 구속석방)	□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	□

※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구공판)된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함

※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고인이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그 신청이 가능함

통지방법	서면	문자	이메일	구두	기타
	□	□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지청장) 귀하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표 4-7〉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Part A

구분		평가항목	예	아니오	알수 없음
가해자 피해자 면담	①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요?			
	②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킨 적이 있나요?			
	③	가해자가 흉기(칼 등 포함)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나요?			
	④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결박하거나 차로 납치한 적이 있나요?			
	⑤	가해자의 행위로 입원 또는 2주 이상 치료,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⑥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⑦	가해자가 신고 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⑧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⑨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나요?			
	⑩	가해자의 신고 보복에 대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경찰 확인	⑪	살인, 감금, 상해, 폭행 등 강력·폭력범죄 전력			
	⑫	보복범죄 전력(특가법 제5조의9의 보복 목적 폭력성범죄)			
	⑬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공공질서 위반범죄 전력			
	⑭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성폭력범죄 전력			
	⑮	가해자-피해자 간 1년 내 3회 이상의 신고이력(112, 고소·고발 등)			
	⑯	이 사건 외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음			

출처 : 경찰청 · 경찰대학,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량화 연구", 2022. 12. 6., 63면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표 4-8〉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Part B

구분		평가항목	예	아니오	알수 없음
가해자 피해자 면담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전이나 현재 연인 또는 배우자 관계인가요?			
	②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 외의 연인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나요?			
	③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또는 연락을 차단하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나요?			
	④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기 위해 피해자 주변 사람에게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⑤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고 있나요?			
	⑥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횟수가 이전보다 잦아지고 있나요?			
	⑦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심해지고 있나요?			
	⑧	가해자에 대해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나요?			
	⑨	가해자가 보호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나요?			
	⑩	가해자가 평소에 술이나 약물로 인한 문제가 있나요?			
	⑪	가해자가 정신과 진료(우울증, 조현병, 자폐, 불안장애, PTSD 등)를 받은 적이 있나요?			
	⑫	가해자가 최근 실직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나요?			
	⑬	가해자가 자살 또는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나요?			
	⑭	가해자가 반려동물을 학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나요?			

출처 : 경찰청 · 경찰대학,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계량화 연구", 2022. 12. 6., 64면

스토킹범죄와 구속제도

사회

스토킹처벌법 2년 만에 신고 2만건 육박... 구속수사 3.6% 뿐

뉴시스 | 업데이트 2023-10-08 10:27

이미지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08/121566045/1

[스토킹범죄 접수·기소·구속 현황(단위 : 명수)]

대상기간	접수 인원	기소 인원	구속 인원
'22. 7.~'22. 12. (개정법 시행 전)	4,231	2,181	148
'23. 7.~'23. 12. (개정법 시행 후)	**5,906**	**2,748**	**167**
전년 동기 대비(%)	**+40%**	**+26%**	**+13%**

출처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 1. 12. 보도자료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스토킹처벌법상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 · 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 · 기간연장 · 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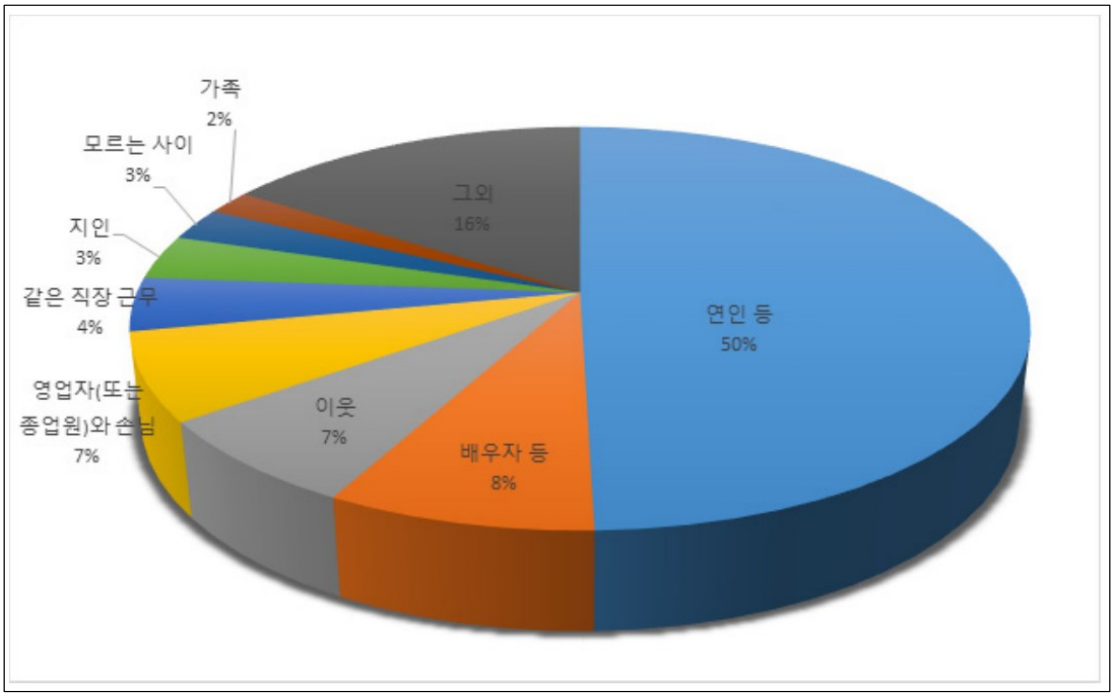

출처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판사),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발표자료, 2023.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방지법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방지법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시 제재

스토킹방지법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방지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토킹방지법상 비밀 유지의 의무

스토킹방지법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문의 : 010 - 2801 - 1260
mge0716@naver.com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제 2 강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문혜정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문혜정 변호사

Contents

Ⅰ 교제폭력에 대한 이해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Ⅰ. 교제폭력에 대한 이해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교제폭력 관련 법률 및 판례
3. 교제폭력의 현황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교제폭력의 개념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無

성별을 기반으로 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이하 "성폭력"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이하 "사이버 성폭력"라 한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교제폭력의 개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데이트 또는 연애한 관계(전배우자 포함)**
- **사귀기 시작(썸)하는 관계**
- **공식적으로 교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정서적·성적 교감을 동반한 만남을 가지는 관계도 포함**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교제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밀치거나 힘껏 떠미는 행위 /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거나, 끌고 다니는 행위 / 목을 조르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행위 /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폭력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적인 행위를 거부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행위(키스, 포옹, 껴안기 등)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강압적인 성관계
정서적 폭력	면박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 폭언을 쏟아붓는 행위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주는 행위 / 겁주기 위해 내가 아끼는 동물, 물건, 사람(자녀포함)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교제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통제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연락과 만남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때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내 몫이 있는 수입, 저축 등 금융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주택, 자동차 등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위 /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물건의 구입과 처분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1. 교제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교제폭력의 유형

교제폭력의 특성
- ◆ 지속적·반복적 발생
- ◆ 폭력의 정당화, 사소화
- ◆ 피해의 중첩성

<교제(데이트)폭력 평생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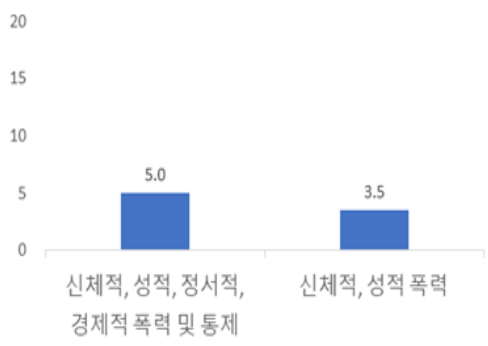

<교제(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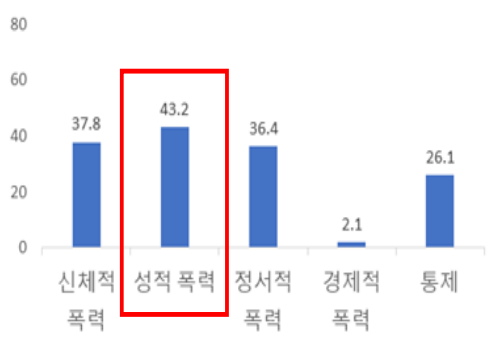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 교제폭력 관련 법률 및 판례

- 교제폭력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X
-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주거침입, 성폭력, 스토킹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 가능
-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 받기 어려움 ⇒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구분	조치	내용
시설	보호시설	장기 보호 필요한 피해자는 유관기관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임시숙소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 등에게 일시 제공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과 그 친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특정시설을 제공하여 신변안전 확보
인력	신변 경호	위험이 긴박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
	맞춤형 순찰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ICT 기술	112시스템 등록	112시스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정보 등록 · 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추적 및 SOS기능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ICT 장치 대여
	CCTV 설치	대상자 주거지 등에 지능형 CCTV설치, 위험요소 상시 확인, 휴대폰 CCTV앱으로 긴급신고 시 경찰 긴급 출동 ※ 배회, 침입 등 행위 형태를 스스로 감지하여 실시간 피해자 또는 경찰서로 위험 상황 알림
가해자	경고제도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 실시
피해자	권고제도	피해자에게 일시적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기타	신원정보 변경·보호	•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제도 활용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이미지 출처: 경찰청(202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2. 교제폭력 관련 법률 및 판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경위와 횟수, 태양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데이트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은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경향성과 경로의존성에 따라 반복되면서 데이트폭력은 점차 집요하고 치밀해지며, 그 폭력의 강도도 점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마침내 피해자는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습벽과 경향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고쳐지지 않는다면 데이트 상대가 바뀔 때마다 가해자의 새로운 연인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나 성행 개선을 위해서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 용서와 호의를 베풀수록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는 악순환 속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했던 참담함과 무력감도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처벌불원의 동기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나 데이트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형요소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전고등법원 2023. 1. 10.자 2022노341 강간, 특수협박).

3. 교제폭력의 현황

이미지 출처: 한국여성변호사회(2023),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112신고) 23. 5월까지, 교제폭력 신고는 30,915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고, 신고 접수된 사건(30,915건) 중 실제 입건(검거)된 사건은 7% 수준(2,223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5월	'23.5월	대비(%)
신고(건)	46,689	50,581	49,225	57,305	70,790	27,712	30,915	11.6↑

구분(건)	계	실제 신고건수				출동중 종결	허위오인	비출동 종결	유형 없음
		소계	검거	인계종결	현장종결				
'23.5월	30,915	25,261	**2,223**	6,097	16,941	154	186	5,309	5
비율(%)	100.0	81.7	**7.2**	19.7	54.8	0.5	0.6	17.2	0.0

※ (비교) 가정폭력의 경우 112신고 대비 검거비율은 5%, 스토킹사건은 7% 수준

(범죄 유형) 폭행 · 상해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가장 많은 비율(68%)을 차지하였음

구분	검거인원(명)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주거침입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2년	12,841	9,068	1,154	2	11	274	764	1,568
'22.5월	4,755	3,430	414	1	6	101	290	513
'23.5월	5,437(100%)	3,713(68%)	484(9%)	1	5	180(3%)	332(6%)	722(13%)
전년대비(%)	14.3↑	8.3↑	16.9↑	-	16.7↓	78.2↑	14.5↑	40.7↑

〈표 Ⅲ-30〉 교제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계	구속	불구속
'17	10,303 (100.0)	417 (4.0)	9,886 (96.0)
'18	10,245 (100.0)	393 (3.8)	9,852 (96.2)
'19	9,858 (100.0)	507 (5.1)	9,351 (94.9)
'20	8,982 (100.0)	241 (2.7)	8,741 (97.3)
'21	10,554 (100.0)	231 (2.2)	10,323 (97.8)
'22	12,841 (100.0)	226 (1.8)	12,615 (98.2)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1. 상담 및 고소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1. 상담 및 고소

1) 피해자 상담 시 주의사항

- ✓ 초기 상담
- ✓ 피해자 조사 전 상담
- ✓ 형사절차 전반, 각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설명
- ✓ 피해사실 관련 쟁점 파악, 증거 확인
- ✓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 검토
- ✓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 파악(증거인멸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 ✓ 지속적인 소통(사건진행상황 통지 등)

1. 상담 및 고소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

- 인적사항
- 범죄사실
- 증거인멸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
- 증거첨부
- 관할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사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

✓ 사건경위서 또는 진술서 형식-참고서류로 별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 진술 시 상세히 진술하겠습니다.

Cf. 고소장 열람복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 관할 이송의 경우

1. 상담 및 고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 · 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 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 ·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1. 상담 및 고소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https://docu.gdoc.go.kr/index.do

경찰서 제출 서류(문서24활용)

- ✓ 고소장
- ✓ 의견서
- ✓ 탄원서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절차 참여 & 구속 사유에 관한 의견 진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고려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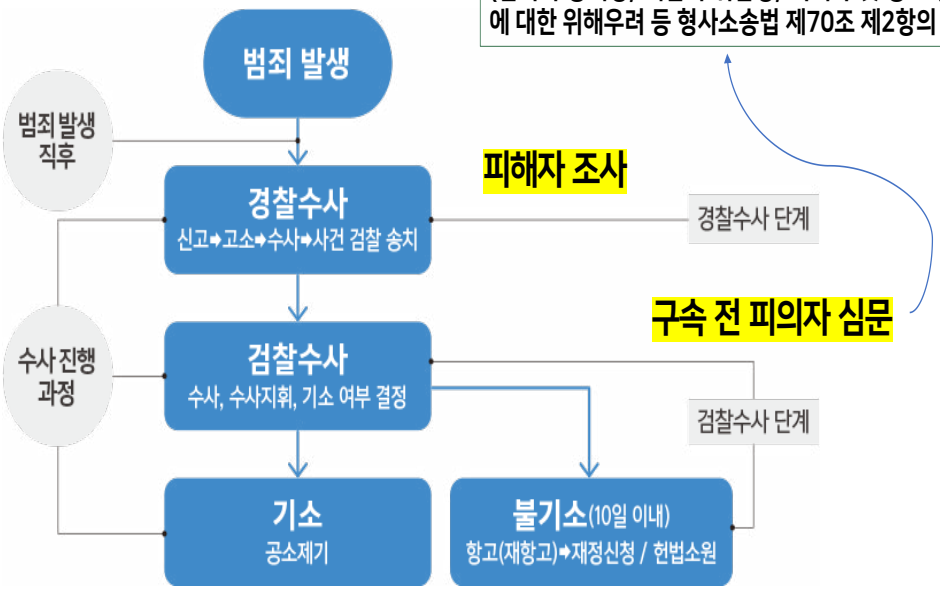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형사소송절차 및 피해자 권리,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cvs/2700/subview.do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1) 피해자 조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제72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

- ✓ 여성 경찰관 조사 및 입회
- ✓ 신변보호
- ✓ 국선변호사 지정
- ✓ 가명조서
- ✓ 신뢰관계자 동석
- ✓ 피해진술 영상녹화
- ✓ 속기록 작성(피해진술 영상녹화 경우에만)
- ✓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 ✓ 진술조력인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1) 피해자 조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조사와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

① 피해사실, 피해 전후의 상황 등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

②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사실'을 진술

③ 진술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사실대로 진술

④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

⑤ 조사 마친 후 조서의 내용 꼼꼼하게 검토

Q. 피해자가 폴리그래프(Polygraph,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해야 하는지?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2)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 정보공개청구(경찰), 사건기록 열람복사 청구(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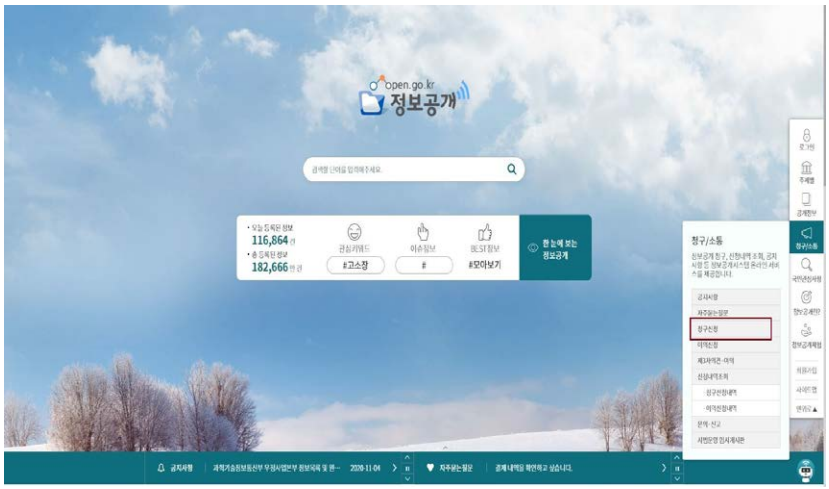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3) 의견서 작성, 제출

Case1. 강제추행 → 유사강간

Case2. 강제추행 → 강간미수

? DNA 검출 ×

피해자 진술 일관

- ✓ 사건의 개요
- ✓ 적용 죄명 및 법조에 관한 의견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 피의자 주장에 대한 반박
- ✓ 피해의 정도
- ✓ 피해 후 피해자의 상황
- ✓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
- ✓ 증거관계
- ✓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
- ✓ 보호조치 등에 대한 의견
- ✓ 사과, 합의, 공탁 등에 관한 의견
- ✓ 피의자 처벌의사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 비록 피해자 E의 외음부 닦은 면봉이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 A의 DNA형 또는 피고인의 A의 것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감정물의 잔량이나 보존 상태 등에 따라서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감정결과로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1848 판결).

- 피고인 측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유전자검사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고합94 판결).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4) 경찰의 송치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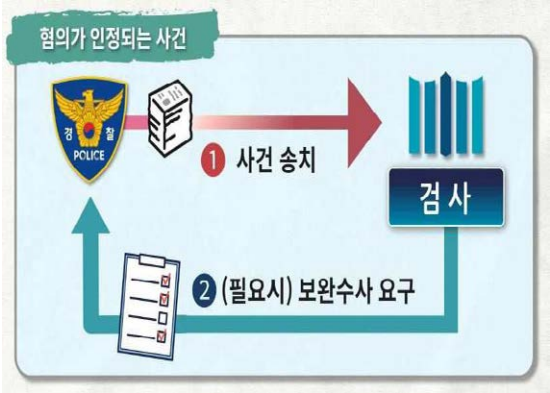

✓ 사건 송치 시 검찰 사건번호 확인 (☎1301)

✓ 검찰청에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의자 (피고인)	성 명 :		
	죄 명 :		
	사건번호 :		
	관할경찰서 또는 사건번호:		

	순번	종 류	신청
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사건처분결과	□
	②	공 판 개 시	□
	③	재 판 결 과	□
	④	구금상황 (수사 및 재판 중 구속석방)	□
	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	■

※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구공판)된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함

※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고인이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그 신청이 가능함

통지방법	서면	문자	이메일	구두	기타
	□	■	□	□	□

2023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이미지 출처: (대검찰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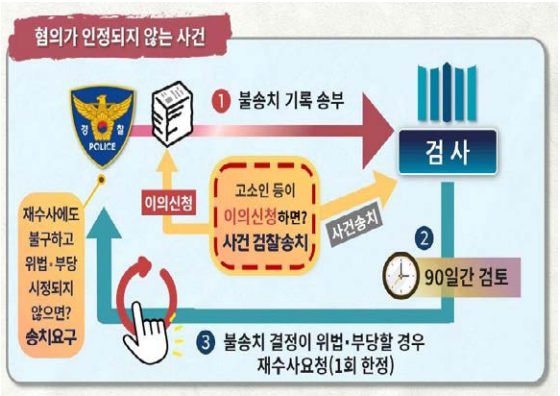

✓ 수사결과통지서 확인

✓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유 기재)

■ 검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
죄 명	
결 정 내 용	

□ 이의신청 이유

별지와 같습니다.

✓ 피의사실의 요지

✓ 불송치결정의 요지

✓ 불송치결정의 부당성

□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종 류	서 면 / 전 화 / 팩 스 / 전 자 우 편 / 문 자 메 시 지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이미지 출처: (대검찰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 ✓ **이의신청 기간 無**
- ✓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이의신청**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 **사건처분결과 확인(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 ✓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 ✓ **피해자 의사 확인, 항고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사절차에서의 지원

7)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재정신청서와 재정신청 이유를 함께 제출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재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 ✓ 기소 후 사건번호 확인
  (☎ 법원 사건과)(공판기일 통지누락대비)
-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 ✓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절차에서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 ✓ 공판기일 출석, 의견진술
- ✓ 증인신문: 증인지원절차 신청
  신뢰관계인 동석
- ✓ 의견서 제출
- ✓ 판결문 발급
- ✓ 판결문 비공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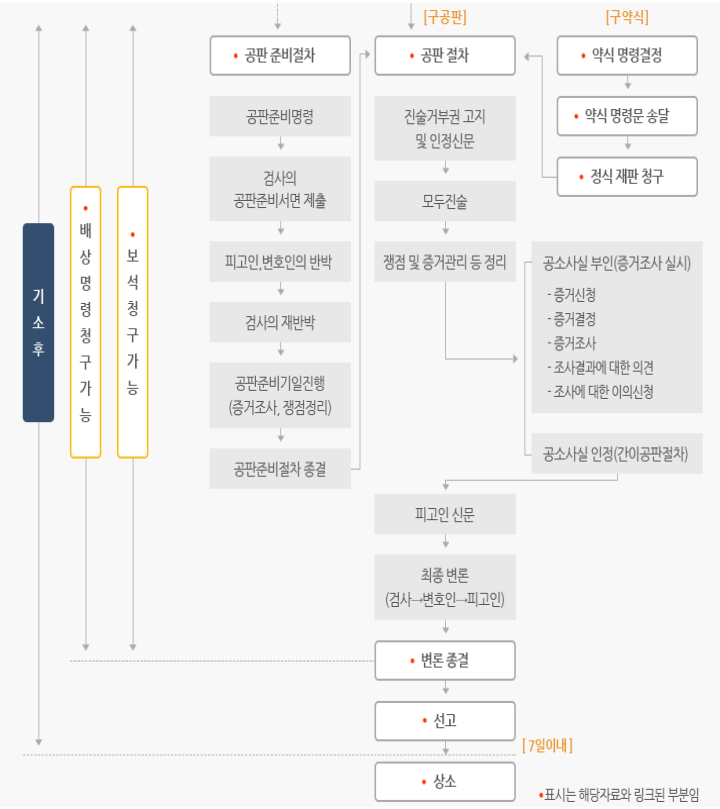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1)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 ✓ **공소장**
- ✓ 공판조서
- ✓ 피고인 변호인 의견서
- ✓ 변론요지서
- ✓ 피고인 반성문
- ✓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피해자 外 참고인)
- ✓ 법원 조사관 양형조사보고서
- ✓ 검사 항소이유서
- ✓ 피고인 변호인 항소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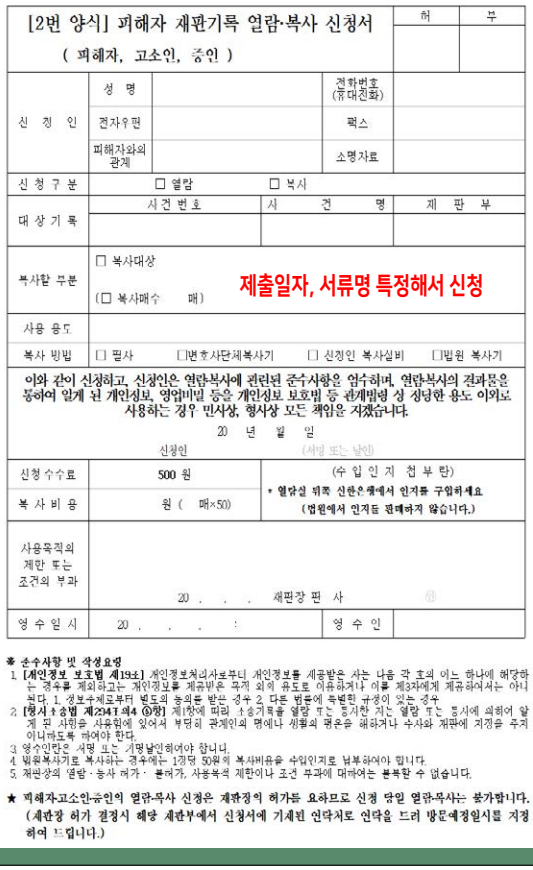

[2번 양식]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해자, 고소인, 증인)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실비 □법원 복사기			

제출일자, 서류명 특정해서 신청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수수료	500 원	(수 입 인 지 첨 부 란)
복 사 비 용	원 (매×50)	• 열람실 뒤쪽 신한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세요 (법원에서 인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20 . . . 재판장 판 사 ㊞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⑥항] 제1항에 따라 1.증거목록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재판상의 열람·등사 허가· 불허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신청 당일 열람·복사는 불가합니다. (재판장 허가 결정시 해당 재판부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 방문예정일시를 지정하여 드립니다.)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2)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절차에서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 · 예비배심원 · 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0. 9. 8.자 2020모2731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2)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절차에서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원심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②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6세, 17세 불과하였고,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미성년자여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마련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대상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대상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20. 9. 8.자 2020모2731 결정).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3) 공판기일 출석, 의견진술,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공판기일 출석, 사건진행상황 파악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4) 증인신문

✓ 증인소환장 송달 주소 변경 신청, 증인지원절차 신청

✓ 신뢰관계인 동석

✓ 증인신문조서 열람·복사 청구

형사소송규칙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 건 20 고합(고단)

다음 각 절차 중 원하는 절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절차 옆의 괄호 안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한 뒤 증인신문 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동봉된 「증인을 위한 안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각 절차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다음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

※ 동석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증인과의 관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

영상증인신문 ..... ( )

※ 영상증인신문 시 희망하는 출석장소
□ 법원 청사 내 법정과 분리독립된 화상중언실
□ 베바라기센터(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 법원 등 증인의 거소
□ 상기 세 장소 모두 무방함
□ 그 밖의 장소(아래 참고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
○ 참고사항
( )

재판결과 통지

※ 다음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무죄 여부 및 유죄 선고 시 형량에 대한 간략한 통지 .....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 (전화번호:)
□ 이메일 사용 (이메일 주소:)

2. 판결문 사본의 송부 ..... ( )
(송달받을 주소:)
다만,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 등에 대한 정보수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판기일 등에 대한 정보 수신 동의 ..... ( )
(전화번호 :)

3.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5) 판결선고 후 판결문 발급, 판결문 비공개 신청

피해자 등 판결등본·초본 송부 신청서

사건번호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재판서 등본 1통당 1,000원
피고인		
신청인	고소인□, 고소대리인□,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사□, 배상신청인 대리인□ (신청인은 위 □ 중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	(우□□□□□)	

(※ 해당란 □에 √ 표시)

□ 위 사건의 판결초본(별지 제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위 사건의 판결초본과 CD(별지 부분)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위 사건의 판결등본(별지 포함)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판결등본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참고사항
1. 판결등본은 판결서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복사하여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하고, 판결초본은 판결서 원본 중 별지 이외의 부분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을 말합니다.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허	부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제한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신청인 자격	□ 피고인 □ 피고인(법인)의 대표자 □ 검사 □ 변호인 □ 보조인 □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대 상 판 결	피고인(성명 또는 명칭)	사건번호	
	위 판결의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대하여도 열람·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아래에 기재하여야 함		
	판결 선고 법원	사건번호	
제 한 사 유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합의 또는 공탁 관련 피해자 지원

- ✓ 피해자에게 합의의 법적 의미 및 효과 설명
- ✓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지속적 합의 요청 여부 확인, 엄벌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합의가 된 경우 →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합의 또는 공탁 관련 피해자 지원

- ✓ 형사공탁특례제도
- ✓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공탁수령거절 의사 및 엄벌 요구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 but 법원의 재량
- ✓ 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문혜정 변호사
010-3241-5953
lawyer4us@naver.com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제 3 강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김영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호사 김영미

무료법률 지원사업 대상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
- **성별을 기반으로 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 **피해자**
-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 기타 운영위원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신종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범위

- 민사 본안(1,2,3심) 및 가처분 등 신청
- 형사(수사, 재판),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 가사 본안(1,2,3심) 및 가처분 등 신청
- 기타 운영위원회가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 가능
- 사회정의와 공서양속에 비추어 구조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는 사건 불허
- 구조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조 중지

구조신청 절차

- 누가: 피해자, 변호사
- 무엇을: 무료법률지원 신청서(별첨) 및 관련 자료(소명자료, 증거자료)
- 어디에: 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 홈페이지 www.help.kwla.or.kr, 이메일 help-kwla@naver.com)
- 수행변호사 선정: 가나다순, 예외)중대사건, 여성단체 협력사건
- 무료법률지원사업 전용 연락처: 02-595-2097

수행변호사 사건 진행 절차

- **피해자 상담- 수행변호사 제출 서류 작성, 소송위임장 또는 선임계 작성**
- **지정된 수행변호사(수임변호사) 제출 서류(별첨 서식 참조)**
  - 무료법률지원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2호)
  - 무료법률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2-1호)
  - 법률상담카드(3호)
- **진행중간보고서-** 분기마다
- **결과보고서-** 종결시

무료법률 지원 수행변호사

- 위촉
  -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일 것
  - 관련 교육 이수할 것
  - 수행변호사 지원신청서 제출
- 해촉
  - 품위손상
  -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거짓보고
  - 본회에 개설된 보수교육 미이수(1년에 1회 이상)
  - 그 밖에 수행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행변호사 의무 및 제한

- 수임변호사의 전 책임 아래 사건 수행하여야 함.
- 수임변호사는 **구조 사건과 관련하여** 별개의 수임계약을 체결 금지

수임변호사 선정취소

- 구조신청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행변호사에서 해촉된 경우
- 수행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임변호사가 사임한 경우
- 수행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건 기록 반환/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수임변호사 사임

-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 구조신청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구조신청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 그 밖에 수행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행변호사 비용 지급

- 서류 제출: 비용청구서 + 제출한 법률서면 사본
- 수임료
  - 본안 150만원
  -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부수사건 각 40만원(독립 사건일때)
  - 피해자 또는 가해자 다수일 때: 1명당 20만원씩 추가
- 본안사건 심급별 지급(수사기관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를 1심으로 봄)
  - 수사기관(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포함)
  - 심의 거쳐 증액 가능(예: 경찰+이의신청+검찰+항고+1심)
- 수임변호사가 동일피해자에 대하여 심급별로 중복 지원할 경우 2심 및 3심은 차등 지급
- 1인당 구조비용은 총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필요한 경우 심의 거쳐 지원가능

수임사건 구조 중단

- 구조를 받은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되거나 또는 사정변경으로 구조사유가 소멸한 경우
- 구조를 받은 의뢰자가 무료법률지원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운영위원회에 구조 중단 요청**

수고하셨습니다^^

별첨 1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별첨 2

양식 안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신청서신청인(피해자)용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동의서(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법률상담카드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비용청구서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건 진행중간보고서

무료법률지원사건 결과보고서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1. 무료법률지원사업 소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공익사건 법률지원 및 상담, 입법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2024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신청대상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호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

◯ 성별을 기반으로 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 피해자

◯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 기타 운영위원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신종 폭력 피해자

◯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며, 국내 거주 외국 여성을 포함함

3.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우선 대체지급을 하고, 소송 종료 후(승소 또는 상황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법률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행변호사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금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할 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구조사업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법률구조절차

신청인은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구조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이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필요성 여부 등 심사 후, 신청인에게 법률구조여부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심사기간은 대략 1주일정도 소요되며, 서류미비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부의 사정

으로 인해 다소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법률구조는 심급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사건 발생 시 다시 신청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5. 서류심사 및 사본제출

법률구조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구조사업부(전화: 02-595-2097)

[제1호 서식]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서

※ 신청 번호 : 2024__ -　　(상담/기록 검토 배당 :　　당사자는 기재하지 말 것)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피해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건의 종류	형사, 민사, 가사, 신청, 기타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인적 사항 (경제적 상황)	* 자산 : 부동산, 동산, 월수입 *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법률지원 필요성에 관한 의견				
담당 변호사명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변호사 이메일 주소		
		변호사 사무실 팩스번호		

2024 .　.　.

위 신청인　　㊞

[제1-1호 서식]

스토킹 및 교제폭력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신청서

{신청인(피해자)용}

신청인 (피해자)	성명					
	주소					
	전화		휴대용전화		이메일	
상대방	성명					
	주소					
	전화		휴대용전화		이메일	
피해의 유형	①스토킹 피해( ) ②교제 성폭력 피해( ), ③교제 상해·폭행 등 피해( ), ④ 교제 명예훼손등 피해( ), ⑤교제 사이버 성폭력 피해( ), ⑥ 교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피해 ( ) ⑦디지털 콘텐츠 및 기사 등 2차 피해( ), ⑧기타( )					
사건의 종류	형사 ( ), 민사( ), 가사( ), 신청( ), 기타 ( )					
무료법률 지원받은 경험유무	과거 무료법률지원 받은 사건 유(내용기재) 무( ) 현재 무료법률지원 받는 사건 유(내용기재) 무( )					
사건의 개요						
증 거						

본인은 연락처 등 위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귀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2024 . . .

위 신청인 ㊞

[제2호 서식]

·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 동의서 ·

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수행기관: 한국여성변호사회)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수행변호사로부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받고 이를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증가에 따른 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이며, 구조범위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관련 민사·형사·가사·신청사건 등을 대리합니다.

2.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행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지급하고, 수행변호사는 소송비용 이외의 금품을 받지 않으며 또한 소송 중의 합의에 대해서도 따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무료법률구조 신청 과정에서 사업부나 수행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야하며, 피해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본 무료법률구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부(02-595-20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은 과도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때문에 해당변호사가 지원할 수 없으면, 신청인이 자부담하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에서 승소 및 합의하여 법원 및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위 금액 중 위촉 수행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신청인에게 환수 요청하여 동 무료법률구조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무료법률구조이용자 만족도조사지'를 작성하시어,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사업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수행변호사는 위 사항을 무료법률구조 신청인이 이해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변호사 명: 연락처:

대표자 명:

◆ **무료법률구조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수행변호사로부터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명: 연락처:

[제2-1호 서식]

「무료법률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무료법률지원 지원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연락 필요 시 이용. -무료법률지원 지원 내역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 무료법률지원지원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및 연구자료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후까지 보관 후 폐기 (* 20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공공 기록물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26조 '사업 시행문서' 5년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무료법률지원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하는 민감정보 항목	피해유형 및 피해 내용/ 경제적 상황/여타 법적지원여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무료법률지원 대상 심사 및 우선지원 대상 선정. -무료법률지원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및 연구자료 활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후까지 보관 후 폐기 (* 2022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공공 기록물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26조 '사업 시행문서' 5년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무료법률지원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사)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제3호 서식]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법률상담카드

상담변호사 : **(인)** **2024 년 월 일**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현재 나이	
	주소			
	전화		휴대전화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		휴대전화	
사 건 명 민사: 사건명 형사: 죄명				
사건 내용				
상담 요지				
상담 변호사 의견				

[제4호 서식]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비용청구서

※접수 번호		(←당사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변호사 소속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팩스	
			이메일	
입금 계좌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법률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피해내역			법률지원내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피해 시기	피해 연령	피해유형	사건번호 / 사건명 / 진행상황 (형사: 죄명 / 민사: 사건명)
						□ 스토킹 □교제폭력 □ 기타	

청구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변호사 보수	착수금	원	형사/민사/가사/기타
	소송비용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보관금	원	
		(기타)	원	
	합 계		원	

□ 무료법률지원 운영기준에 의해 법률지원 비용을 청구합니다.

2024 . .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귀하

[제5호 서식]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건 진행중간보고서

접수번호 제 20 - 호 (담당자는 기재 말 것)

귀 기관의 접수번호 제 _____호 법률지원신청사건에 대한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사건명	(형사:죄명 / 민사: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
사건진행내용	(진행날짜_내용)		
2024 . . 담당변호사 _____ (인)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귀하			

[제6호 서식]

무료법률지원사건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제 20 - 호 (담당자는 기재 말 것)

<table>
<tr><td colspan="5">귀 기관의 접수번호 제 _____호 법률지원신청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종료되었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td></tr>
<tr><td colspan="2">사건명</td><td colspan="3">(형사:죄명 / 민사:사건명)</td></tr>
<tr><td colspan="2">사건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당사자</td><td>피해자:
원고 / 피고 / (　　)</td><td>상대방</td><td>가해자:</td></tr>
<tr><td colspan="2">선고일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청구취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판결
내용</td><td>주문</td><td colspan="3"></td></tr>
<tr><td>이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상소여부 등에 관한 의견</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건지원내용</td><td colspan="3">변호사 지원활동 자세하게 기재 요
(진행날짜_내용)</td></tr>
<tr><td colspan="2">기타참고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첨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2024 . .
담당변호사 _____ (인)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귀하</td></tr>
</table>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 기본사항(해당되는 □에 ✓표시 또는 직접 기재)

성 별	□남 □여	연 령	( )세	구조의뢰일자	20 . . .
거 주 지	시・군・구까지만 기재				
구 조 유 형	□민사 □가사 □형사 □단순상담 □기타( )				
이 용 경 로	□여성가족부 □언론 등 □상담소・쉼터 □수사기관 □이웃 □변호사단체 □친척 □기타( )				
지 원 단 체		위촉변호사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오.

설 문 내 용	①	②	③	④	⑤
1. 담당변호사와는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 안됨
2. 담당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은 가질 수 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담당변호사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구조과정에서 담당변호사로부터 가해자와의 협의를 종용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담당변호사가 사건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6. 이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본인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 이용과정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8.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8-1. 6번문에서 만족으로 응답하신 경우 –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사항을 기재하세요*				
8-2. 6번문에서 불만족으로 답하신 경우 –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셨습니까?	*불만사항을 기재하세요*				
9.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법률구조를 받도록 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

참고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2조(항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제14조(항고의 재판)
제15조(재항고)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0조(벌칙)
제21조삭 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7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7.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

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제21조 삭제 <2023. 7. 11.>

부칙 <제1808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8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2,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7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의 취소·변경 시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잠정조치의 취소·변경·추가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또는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1866호, 2021. 7. 6.,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712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1866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7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216호, 2023.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1호, 2023. 7. 11., 제정]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7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주거·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3631호, 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